

연구개발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규정 제264호

연구개발업무규정

확 정 일 : 2022년 1월 28일

시 행 일 : 2022년 3월 2일

연구개발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사유

-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연구지원처와 연구기획실 통합 후 연구기획처로 명칭 변경, 2021.1.1 시행)
- 타부서로 이관된 녹색건축인증 등 정부대행인증·평가업무 관련 조항 삭제

2. 주요골자

가. 연구원 조직개편사항 반영(안 제2조, 제10조, 제13조)

나. 타부서로 이관된 정부대행 인증·평가업무 규정 삭제(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붙임 : 연구개발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연구개발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구개발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연구지원부서의 장”을 “연구기획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연구지원부서의 장과 연구기획부서의 장”을 “연구기획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구지원부서의 장”을 “연구기획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2022.1.28>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원부서”란 연구업무를 지원·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6. (생 략)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2~6. (현행과 같음)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연구지원처와 연구기획실 통합 후 연구기획처로 명칭 변경, 2021.1.1 시행)
제10조(연구과제 제안) ① 현업부서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연구지원부서의 장에게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연구지원부서의 장과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토지주택연구원 외부의 전문가 그룹과 개인, 관련 부처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다.	제10조(연구과제 제안) ① 현업부서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u>연구기획부서의 장</u> 에게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연구기획부서의 장</u> 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토지주택연구원 외부의 전문가 그룹과 개인, 관련 부처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다.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13조(연구과제 수행방법) ① (생 략) ② 현업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지원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연구과제 수행방법) ① (생략) ② 현업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u>연구기획부서의 장</u>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24조(녹색건축 인증) (생략) 제26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생략) 제26조의2(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생략)	<삭 제> <삭 제> <삭 제>	해당업무 타부서이관 및 「녹색건축인증업무지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업무지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처리 지침」 제정으로 관련조항 삭제

연구개발업무규정

제정 2009.10. 1 규정 제37호

개정 2009.12.29 규정 제41호

개정 2010.10. 1 규정 제55호

개정 2011.10.25 규정 제71호

개정 2014. 6. 9 규정 제112호

개정 2017.12.27 규정 제172호

개정 2022.1.28 규정 제2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1.28>

2. “연구기획부서”란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방침 및 수행계획 등을 종합 조정·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연구수행부서”란 연구분야별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란 토지주택연구원 이외의 본사, 지역본부·사업본부를 말한다.

5. “학술연구용역”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1호의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6.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구업무 관련 위원회

제3조 삭제 <2014.06.09>

제4조(연구업무조정위원회) ① 토지주택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업무 수행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업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심의위원회)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연심위”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연심위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계획 수립

제6조 삭제 <2014.06.09>

제7조(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① 사장은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대내외 경영여건,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은 3년 단위로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연구개발계획 수립) ① 연구원장은 중장기 연구개발계획과 다음 연도의 공사 경영목표,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중점연구사업 및 연구목표를 설정하는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연구과제 제안 및 선정

제9조(연구과제의 구분) ① 연구과제는 선정 및 착수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연구과제 : 중장기·연도별 연구개발계획 등에 따라 연구원의 정기연구과제 제안요청을 통하여 선정된 연구과제
2. 수시연구과제 : 정기연구과제 이외에 공사 외부기관 및 현업부서 등의 경영현안 등에 의해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선정된 연구과제
3. 이월연구과제 : 해당 연도 이전에 정기 및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수행하였으나 완료하지 않고 당해로 이월된 연구과제

② 연구과제는 연구예산 및 수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연구과제 : 연구예산의 전액을 공사가 출자하여 토지주택연구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2. 위탁연구과제 : 연구과제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 및 개인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3. 공동연구과제 :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4. 수탁연구과제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등 외부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제10조(연구과제 제안) ① 현업부서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연구기획부서의 장에게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②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소속 연구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기획부서의 장에게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토지주택연구원 외부의 전문가 그룹과 개인, 관련 부처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 연구과제 제안과 관련된 작성내용, 방식,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과제 선정) ① 정기연구과제 선정은 각 연구수행부서의 사전 검토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정한다.

② 수시연구과제 선정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정한다.

③ 연구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

제12조 삭제 <2014.06.09>

제13조(연구과제 수행방법) ① 연구과제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토지주택연구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위탁연구 또는 수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기획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8>

제14조(연구책임자 지정 및 연구진 구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특성 및 연구내용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연구경력 및 능력 등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선정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위촉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과제의 진행) ①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과제는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구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연구진행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과제의 관리)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심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공동·위탁·수탁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협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달리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① 연구보고서는 최종 연심위의 심의를 거쳐 발간한다. 다만, 공동·위탁·수탁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협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보고서 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관련 현업부서에 배포하여 활용하되, 필요시 외부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연구결과 평가 및 성과 관리 등

제19조(연구결과 평가) ① 연구원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결과는 연구원 및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종합근무평정,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연구성과 관리) 연구원장은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성과 전담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4.06.09>

제22조(연구결과 귀속 및 대외발표) ①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공동 및 수탁연구과제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연구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국내외 대외기관과의 교류협력) 토지주택연구원의 역량 강화 및 연구기능 활성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외기관과의 정보교류, MOU체결, 공동연구 수행, 전문가 활용, 세미나 개최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장 정부대행 인증·평가 업무 등

제24조 삭제 <2022.1.28>

제25조 삭제 <2014.06.09>

제26조 삭제 <2022.1.28>

제26조의2 삭제 <2022.1.28>

제26조의3(친환경주택건설기준 및 성능 등 평가) ①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및 성능”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유도 및 촉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기준 등을 말한다.

②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의 의뢰를 받아 친환경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녹색도시건축센터를 구성·운영한다.

제8장 삭제 <2017.12.27>

제27조 삭제 <2010.10.01>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2017.12.27>

제30조 삭제 <2014.06.09>

부 칙<2009.10.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1>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이 규정은 2011년 11월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09>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27>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8>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